

중재위원, 신청인, 언론사가 바라본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

# 01-4 언론중재위원회 40주년 - '피신청인'의 변

오이석 JTBC 기동이슈팀장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와 조정신청<sup>1)</sup> 사건을 통해 직접 인연을 맺은 지 4년째다. 법조팀과 기동이슈팀의 팀장을 지내며 다양한 사건을 다룬 부서장의 숙명이랄까. 법조팀장이 된 2016년 말부터 이른바 국정농단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을 취재 보도하며 언중위 사건부터 민·형사소송까지 분쟁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다. 2020년 5월 기동이슈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언중위와의 질긴(?) 인연이 계속됐다. 20명이 넘는 기자가 국제뉴스 빼고 다 다룬다는 부서의 성격으로 불과 석 달 전에도 언중위에 출석했다. 해가 바뀌어도 언중위 심리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15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학창시절 교무실에 불러가던 때와 같은 두근거림이 느껴지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그 동안 한 사람이 10여 건의 정정보도를 신청하거나, 변호사 이름을 10명쯤 담아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방불케하는 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정 신청을 낸 사례도 있었다. 신청인도 개인부터 단체까지 다양했고, 방법도 해를 거듭할수록 기자들끼리 대응하기엔 버거운 정도로 정교함을 더해 무시무시해지고 있다.

## 조정의 추억

2017년 초, A씨는 자신과 관련된 10여 건의 JTBC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부처의 주요 공직자였던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정부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지인들과 논의한 내용을 다룬 보도 때문이었다. 우리 취재팀 외에 해당 기사를 추종보도 한 10여개 언론사도 대상이었다. 그런데 A는 우리 측과의 조정기일이 임박하자 사전 만남을 제의해 왔다. 다른 언론사들이 관련 보도를 정정하거나 삭제한 뒤였다.

당시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터라 비공식적인 만남이 불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정중한 요청이 이어졌고, 결국 기일 전 제3의 장소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A가 하소연을 시작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지만, 본인이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언중위 조정에 큰 기대를 하거나, 소송을 낼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처지를 1시간 가까이 설명하곤, 인터넷에서 단어 하나만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보도 내용의 흐름이 바뀌지도 않고, 어떤 측면에선 가혹한 표현일 수 있겠다 판단에 요구를 수락했다. 다음날 언중위 측으로부터 “신청인이 모든 사건을 취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마 당시 조사관도 나만큼이나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1) 아직 중재신청 사건은 없었다.

썩쓸한 뒷맛을 남긴 사건도 있었다. 역시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B씨의 비리의혹을 다룬 보도였다. 취재팀이 그가 근무한 조직의 안팎 취재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B씨를 직접 만나 반론도 받았다. 하지만 조정기일에 나온 B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악의적 보도이고, 근무 내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 왔으며 무고를 주장했다. 특히 기사에 담긴 반론도 조작한 것이라 취지의 공격을 하며 사실과 다른 말도 서슴치 않았다. 취재원을 알아내려는 시도까지 이어졌다. 당시 취재 과정이 모두 녹음된 상황이었더라 나도 반론을 펼쳤다. 급기야 서로의 고성이가 오가는 상황, 한 중재위원이 내게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합의할 생각도 없이 나왔느냐”며 호통쳤다. 결국 반론 보도를 내주기 한 뒤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중재위원의 말처럼 합의할 생각을 하고 나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반론 보도 이후 B씨와 그가 근무했던 기관은 해당 결과를 이용했다. 보도가 잘못됐으며, 자신들의 무결함을 확인 받은 것처럼 활용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형사재판에선 대부분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화제를 마신 것처럼 시원했던 경험도 있다. 소송이 시작된 터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다. 다만 중재부가 취재팀이 ‘언론의 본분을 다했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신청인과 변호사의 억지스런 주장을 질책한 사안이다. 결과는 조정 불성립. 최근 신청인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았다. 언론위에서의 상황을 법원에 가서 고스란히 보여줄 수도 없고 아쉬움이 남는다.



### 중재부 조정의 기술... 냉정과 열정 사이

얼마 전 각기 다른 언론사에 있는 동료들에게 언론위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느낀 점을 물었다. 의외로 결론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 대신 일부 중재위원들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 ‘보도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사다’
- ‘취지나 맥락이 중요하게 아니고, 단어나 표현 자체가 문제 아닌가’

주관적 평가, 기사 전체의 맥락에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들에서다. 이런 말과 분위기의 효과는 불쾌함에서 그치지 않았다. 신청인이 이를 방어기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재부에서 나온 말 한 마디가 신청인에게 ‘보도자체가 부당했으며, 악의적이었다’는 것을 공적 기관에서 인정할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신청인들은 조정기일에 오간 말을 이후 소송이나 외부 대응 시 왜곡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보도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중재부의 ‘언론을 꾸짖는’ 표현들을 감정적으로 격해진 신청인을 진정시키고, 방어논리로 무장한 피신청인(언론)을 화해의 장에 나서도록 하려는 열정이 담긴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언론이 머뭇거리는 정정보도 대신 반론 보도로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한 조정의 기술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사실 확인과 반론 취재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사, 오보 등에 대한 질책과 비판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론위가 시민의 침해받은 인격권을 회복하기 위해 탄생했다라도, 언론도 사건의 한쪽 당사자라는 점이 잊혀 진다면 언론, 기자에게 있어 조정·중재가 이루어지는 언론위 심리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느낌을 줄 뿐이다. 특히 중재부는 현직 판사부터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나 미디어 관련 단체 대표,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이력에서 보듯 대부분 언론 분쟁 사건,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언론을 비평하기에 충분한 경력을 갖춘 인사들이다. 그래서 표현과 조정 과정에 기자들이 더 신경쓴다고 이해해주시길 요청해본다.

### 언중위서 언론은 ‘을’... 위축효과의 가속화

앞서와 같은 기분은 언론위에서 언론의 지위와도 연결된다. 법원에서와 달리 언론위에선 언론은 절대 을의 입장이다. 기일 연기가 사실상 어렵고 부득이하게 열린 2회 기일은 1회 기일 불출석이란 상황에서 반드시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또 조정 불성립은 소송 가능성이 열리는데다 방송의 경우 재승인 문제와도

연결된 민감한 문제다. 언론이 평소와 달리 을의 자세로 인증위 절차를 밟는 과정을, 팩트를 촘촘하게 취재하고,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긍정적인 효과다. 필자 역시 2017년부터 조정중재신청에서의 문제들을 거울삼아 팩트를 좀 더 세심히 다루려는 노력을 하는 편이다. 이는 작은 꼬투리도 잡히지 않도록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심리적 효과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면을 위축효과라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사의 맥락이나 취재 내용과 다른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스크와 기자는 지속적으로 취재 과정과 내용,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요구 받는다. 이 경우 준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다. 관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기자가 사건의 당사자로 바뀌면서 이후 다루는 기사에서 자기검열의 늪에 빠지는 셈이다. 실제로 인증위 제소나 소송 경험이 있는 기자의 경우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겨 취재와 보도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인증위에 청구된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에만 청구된 사건 수가 그 전년보다 10% 이상 늘었다. 신청인도 개인부터, 회사,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다양하며, 눈에 띄는 점은 개인의 신청이 완만하게 늘어난 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종교단체 등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신청 사건의 배경을 3가지로 압축해보면 사실에 대한 취재가 소홀했거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더 이상의 보도를 원치 않아서일 것이다.

◎ 신청인 유형 현황<sup>2)</sup>

구분	청구건수	개인	일반단체	회사	교육기관	종교단체	국가기관	지자체 · 공공단체
2019년	3544	1934	532	652	74	45	66	241
2020년	3924	2187	375	739	125	98	108	292

단체들에 대한 보도의 경우 대체로 단체장 또는 단체의 정책과 관련된 보도들이 많았을 터인데, 다만 2018년부터 인증위에서의 피해 구제율이 70%대에서 60%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조정불성립이나 기각, 각하 등의 사건이 늘고 있는 현상이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조

그렇다면 데스크나 기자가 인증위 제소 사실이 담긴 우편물을 받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 '말도 안된다'와 '소송까지 가면 이길까?'란 셈법이다. '제3자가 화해를 돕는' 중재라는 이름과 달리 기자들이 조정신청서를 받아들면 이 과정을 싸움, 전투로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식과 달리 인증위 사건의 상당수는 전장의 확대 개념으로 보긴 어렵다. 인증위까지 온 상당수 사건 내용은 신청인의 하소연이다. 언론에 직접 전하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공적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 목소리가 주는 메시지다. 개별 사건들을 놓고 보면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 말도 안되거나, 단어와 표현을 하나 바꿔달라는 수준으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을 봐야한다. 해마다 3천건이 넘는 사건이 들어오고, 지난해엔 4천 건에 육박한 조정신청의 피해구제율이 67% 이상인 점이 갖는 의미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앞서 말한 '하소연'에 언론이 귀를 열지 않아서다.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가 반복된다면 취재 보도 과정의 시스템 전반의 이상 신호로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부서나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무에 대한 교육 등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다. 서로 다른 사건을 통해 반복되는 조정 및 중재 신청, 이어지는 소송은 반론에서 끝날 보도들이 정정보도가 되고, 손해배상까지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언론이 극도로 기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시대의 전조인 셈이다.

### 인증위는 '오답 노트'

이런 면을 곱씹어보면 인증위 사건은 일종의 오답노트다. 학창시절 만든 오답 노트처럼 인증위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면 정답이 보인다. 취재 과정에서의 정교함을 더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어와 조사의 조정만으로도 신청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는 기사를 시민들에 내놓을 수 있다. 현재의 일부 언론도 인증위에서의 사건을 교훈 삼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이 당장의 소나기만 피하는데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한다. 기자 개인 또는 부서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의 데스크는 이런 인증위 경험을 기사를 사전 검열(과격한 표현이나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하는 근거로 삼는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오류가 반복되는

2) 언론중재위 홈페이지 조정신청 처리현황 발제 종합


악순환을 거듭한다. 조정신청의 결론에서 반론 보도가 많은 점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분한 반론의 기회, 그리고 반영의 문제, 이 부분은 언론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언중위에 오기 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또 각종 인격권에 대한 고민이 소홀했는지 지금까지의 사건을 통해 되돌아봐야 한다.

취재와 보도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진실을 숨기는 것에 있다. 반론은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반론마저도 두려워한다. 완벽하지 못한 점을 들춰낸 것처럼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언중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중위는 한 해 3000여건의 사건을 통해 이미 각 언론사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언중위 역할은 제한적이다. 기계적인 조정 기일 통보와 사실상 한차례 기일에서의 의견 조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 기대하고 있으나 법원에서의 분쟁과정처럼 사건의 실체를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민간 위원들이 다수인 언중위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과 언론 전문가라는 양면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판의 진행자인 법원의 판사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에 뛰어들어 개입할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언중위가 민형사 소송 전 사전구제 제도로 더 정착하기 위해선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해보인다.



우선 조정 기일의 횟수를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양자의 의견을 조정하며 나서야 한다. 특히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심리실에서 시민의 권리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 나누는 토론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 또 관련 내용이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조정규칙에 따르면 조정 기록을 열람등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언중위의 교육 시스템을 보자. 이 역시 제한적이다. 자발적 교육지원자에 한정된 교육, 연구자료 등을 발간하는데 멈춘다. 강제 교육과 과정, 개별 언론사들에 대한 순회 교육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중위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오답노트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언중위는 우리 언론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40년간 다룬 수많은 사건, 통계와 사건의 내용, 조정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건 언중위뿐이다. 2019년 언중위 출신 변호사를 초빙한 사내 교육이 진행됐다. 불과 1시간 남짓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강의에선 다양한 케이스가 언급됐고, 문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실확인'과 '반론'이다. 언론사는 이 문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 아니 외면한다. 그리고 그저 당면한 분쟁을 해소하기에 급급하다. 따라서 언중위가 단지 신청인의 하소연을 해소해주는 소극적인 기관에서 더 나아가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 

### 앞으로 40년... 언론분쟁의 중심 기관으로 나서야